

■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

(제13조제3항 관련)

종전 별정직공무원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일반직공무원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	